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8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2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8.

다.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 (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105조, 제105조의2 신설).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안 제10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⑧ (생략) ⑨ 제8항에 따른 <u>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u>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 -</u> ----- ----- -----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⑩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 ----- -----. ⑫ -----제10항----- ----- -----. ⑬ -----제9항 및 제10항-----. ⑭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⑮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⑯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항에 따른 임원 중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과 선거권자 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u><신 설></u>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제105조에 따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종류 또는 지역 등을 지정하여 권리를 신탁할 권리 2.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3. 제10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5.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6.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3. 제105조제11항----- ----- ----- -----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에 대한 승인, 업무규정·재무정보 공개, 보고·조사 및 명령 등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용허락 거부금지, 통합징수, 회계·운영자료 공개의무 및 위반 시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이나 재허가 절차,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회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허가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참여와 통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감독)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1조(과징금 처분)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 및 임원 선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²⁾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사후적 관리·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허가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³⁾

2)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회장 임금의 과도한 인상 및 소급지급, 임원 업무추진비·회의비·출장비 등의 과다 집행, 자문비 및 비상임이사 회의비의 과도한 지급,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3)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강박상의 ‘특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입법이 곧바로 기존 허가자의 기득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래를 향하여 허가 존속 조건을 변경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과의

아울러,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총회 출석 및 의결권,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신탁단체가 권리자의 이익을 신탁받아 운영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참여와 통제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개정안은 권리의 일부 신탁,⁴⁾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자의 선택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의사결정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판단됨.

관계에서도 재허가 제도 도입 자체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분야별 총 12개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음.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영역	단체명	집중 관리 분야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어문, 사진, 연극, 영상, 미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 제작자의 권리
	한국영화배급협회	영상 제작자의 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방송 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의 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자의 권리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저작권법상 권리

(자료: 2024 저작권백서)

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일부 신탁단체에서 저작권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미래에 취득하게 되는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신탁계약약관」으로 강제하고 있는바, 회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전면적·인별 신탁을 강제하는 해외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도의 도입, 수수료 요율 승인 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회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다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관련 협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등 사후적 감독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수수료 요율에 대한 매년 승인제, 정관 변경 및 임원 취임 승인,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도 등은 단체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행정 부담 및 예측 가능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회원의 권리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분리 신탁 및 직접 이용허락 허용이 개별 저작권자를 통한 별도의 이용허락과 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이용허락이 혼재하여 이용허락 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이용자 단체 및 관련 업계에

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불투명한 사용료 산정·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와의 사용료 협의 과정에서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분리신탁 제도 도입 시 이용자의 권리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분리신탁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용자가 분리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면책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신탁단체, 이용자 의견

○ 신탁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사)한국방송작가협회 (26.1.2.)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관리수수료 요율이 매년 승인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매년 심사·보완요구 등이 반복되며 승인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과 예측불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큼 - 문체부는 법령상 업무점검·시정 등의 감독수단을 통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 • (제105조 제14항) 정관은 회원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내부 규범으로, 전면 허가제로 국가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전반에 상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부 규정·조직·절차를 신속히 정비해야 하는데, 매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운영공백과 비용이 초래됨 • (제105조 제15항) 임원 선출은 회원이 행사하는 고유한 결정권한이며,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증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임원 취임을 별도로 승인대상으로 할 경우 중복·과잉 규제에 해당함 - 승인절차가 지연될 경우 의사결정 지연, 이용허락계약, 해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의 정산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제105조 제16항) 규제강도가 매우 높고, 위탁 비용이 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어 회원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단서의 '규모 이하'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큼 • (제105조의2) 이용허락, 징수·분배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재허가제보다는 기존 제재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재허가 절차를 부령에 위임할 경우 심사기한·보완·효력유지 등이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됨 • (제105조의3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는 해석의 폭이 넓고, 제1호의 경우 회원이 개별 이용허락을 남발할 경우 이용자와 혼선·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제6호의 경우, 임·직원 보수까지 총회가 결정한다면 인사·노무·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성과·책임경영을 약화시킬 수 있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26.1.5.)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현행법은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충분한 감독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계약 당사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함 - 수수료율에 대한 연단위 승인제는 반복적인 행정부담과 운영상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2007년 폐지된 제도로, 협회는 이후 18년간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구조와 조직운영 계획을 수립해 온 바,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제105조 제15항) 문체부의 임원 취임 승인권은 협회 정관에 따른 내부 규율에 불과한 것인데, 해당 절차를 법에 명시할 경우 사단 법인의 인사·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임원 결격사유 존부 판단,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관련 감독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제105조의2)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산시스템 마련 등 신규 신탁관리업 허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수수료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저작권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료 징수·분배, 이용허락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저작권자 권익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 신탁관리업자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허가 시 부과된 조건은 당해 허가에 대한 사항일 뿐 새로운 재허가와는 실체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재허가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어 하나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 • (제105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 저작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상 권리로 신탁범위 선택권을 명시하는 방식은 국내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실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음 - 신탁범위 선택권을 법제화할 경우 단일한 관리주체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의 실효적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목적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글로벌 유통사업자 등 거래상대방보다 권리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으며, 그 대가 또한 신탁관리업자의 관리 하에서 형성되는 사용료 수준에 비해 낮게 설정될 우려가 있음 - 개별 저작권자를 통한 별도의 이용허락과 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이용허락이 혼재하여 절차의 복잡성과 거래비용 증대, 관리주체 오인·누락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신탁관리업자의 비위행위 방지 및 방만경영 시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관리·감독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연단위 승인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큼 - 제6호의 경우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26.1.5.)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듦 • (제105조 제15항) 민간 단체의 임원 선임을 정부가 승인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제105조의2)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고, 정부 허가권이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제105조 제1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발생 및 단체 내부 정관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사)한국문학 예술저작권 협회 (‘26.1.5.)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 매년 승인을 받되, 전년도와 동일한 사용료 및 수수료 유지 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 • (제105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은 이미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삭제 필요 • (제105조의3 제1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대부분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공공기관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필요 - 제1호의 경우, 저작권자가 지역 등 조건을 상세히 지정하여 신탁하는 것은 집중관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용허락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할 권리’로 한정할 필요 있음 - 제2호의 경우 제1호에 포섭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삭제 필요 -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삭제 필요 • (제105조의3 제2항 및 제3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삭제 필요
(사)함께하는 음악저작권 협회 (‘26.1.5.)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현행 「저작권법」 제105조 제12항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수수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승인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허가주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재량을 축소시키는 것임 • (제105조 제14항)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음 • (제105조 제15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별 사정이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모든 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취임을 문체부의 허가대상으로 고정하는 것은 신규 신탁관리업자에게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제105조의2) 저작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5년의 허가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임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는 허가취소 사유 보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제105조의3 제1항) 협회는 이미 제1호, 제2호에 따른 분리신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일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人)별 신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저작권자가 현재 소유한 저작권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저작권까지 모두 하나의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 - 제3호의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수준에 대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 필요 -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총회의결의 절차적 요건 및 대리투표에 따른 공정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 - 제6호의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내지 사원총회를 통해 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삭제 필요

(사)한국음악 실연자 연합회 (‘26.1.5.)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편성과 자유로운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개정목적은 시정명령 등 사후감독 체계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105조 제15항) 대부분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들은 문체부에게 임원 취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제105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운영 주체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신탁관리업 지정취소에 따른 징수·분배 업무 공백 발생 시 권리자의 경제적 손실 및 이용자의 이용허락 경로 상실이 예상됨 - 또한 허가조건 미이행 시 재허가 배제 또는 취소로 연결될 수 있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감독기관의 판단에 종속시키는 결과로 인식될 수 있음 • (제105조의3 제1항) 제6호의 경우 임직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은 노동관계 법령, 내부규정,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이며, 이미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등을 통해 보수체계를 심의·의결하고 있음
(사)한국방송 실연자권리 협회 (‘26.1.5.)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9항)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 요율 변동 시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있고, - 변동이 없어도 매년 승인을 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함 • (제105조 제10항) 이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정 불필요 • (제105조 제14항 및 제15항) 이미 「민법」 제37조 및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 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 민간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삭제 필요 • (제105조 제16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탁 대상은 농·수산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에 한정되어 있음 • (제105조의2) 현행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허가 심사 대응에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음 • (제105조의3 제1항) 제6호의 경우 악의적 민원이나 외부 압박으로 정상적 조직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또한 임직원 수가 25명에 불과한 협회의 경우 직원 개인의 연봉 정보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이용자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26.1.2.)	<전부 동의> • (제105조) 비위, 방만경영, 이용자와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현행 감독체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 사용료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신탁관리업자의 투명한 조직운영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투명한 사용료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 찬성함
한국방송 협회 (26.1.5.)	<개정안에 동의하나 일부 조항 보완 필요> • 문체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 제105조의3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가 여러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분리하여 신탁할 경우 이용자는 권리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분리신탁의 내용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용자가 분리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OTT음악 저작권 대책협의회 (26.1.6.)	<전부 동의> • (제105조 제10항) 이해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균형잡힌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제105조 제14항 내지 제16항) 일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부정 선거, 배임·횡령 등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임 • (제105조의2) 일부 신탁관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남발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비합리적 사용료 징수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 재허가 심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물 이용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산업 전반의 신뢰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임 • (제105조의3) 내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유관단체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대한출판 문화협회 (‘26.1.5.)	<전부 동의> • (제105조 제16항 및 제105조의3) 특정 집단에 의한 단체 사유화를 방지하고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제105조의2) 행정편의적인 자동 갱신 관행을 타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임 - 주기적으로 신규 단체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26.1.13.)	<전부 동의> • 업계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음악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 필요

참고2

해외사례

국가명	내용
프랑스	「저작권법」 제321-1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그들이 대표하는 권리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권리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권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의무를 이 보유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제322-3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재산권 관리에 대한 동의는 권리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이 단체의 정관 또는 일반규정으로 정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권리의 범주, 특정 유형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물 및 적용 지역과 관련된다. 이러한 동의 범위는 전자적 방법과 같이 권리보유자가 동의 의사를 표시한 해당 문서에 명시한다. 권리보유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동의한 관리에 대한 권리 행사 범위를 정의할 자유를 갖되, 이러한 자유의 행사 시 이 단체가 설정한 권리 범위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권리의 부여가 필수인 경우 그 사업 목적, 활동 및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3-1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의사결정 시에 각기 다른 회원 집단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한다. 제323-8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모든 회원은 법률, 정관 및 일반규정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가 있다. 단체 회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회원 가입 기간 또는 회원의 저작재산권 이용에 따라 받았거나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수입 액수에 따라 정관 또는 일반규정으로 제한하되, 이러한 제한은 결함이 가능한 위에 언급한 기준들이 공평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정의되어 이에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3-9조 총회에서 위임권을 행사하려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특히 위임자와 대리인이 이 단체에서 각기 다른 권리보유자 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위임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 위임권은 한 번의 총회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대리인은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총회에서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대리인은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제공한 표결 지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201조(d) 소유권 이전 (1) 저작권의 소유권은 양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며, 유증하거나 관계된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동산으로서 이전할 수 있다. (2) 저작권에 포함된 배타적 권리들과 제106조에 명시된 권리들은 (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다.
한-미 FTA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6.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